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통합관리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임차인이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의무를 지도록 명시하고,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근거를 신설하며, 이 경우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6 및 제33조).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동일한 시설로 연속하여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후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완함(안 제12조제2항, 제16조, 제22조, 제38조 및 제44조 등).

II. 검토의견

안 제38조제4호1)는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

1) 안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2)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한 조치인 경과조치, 그리고 다른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본칙의 적용상의 시점이나 대상을 규정하여 신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률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바³⁾,

법률이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본칙이 아닌, 부칙을

4. 제22조제1항·제2항 또는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당 업종의 적용일부터 4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조기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전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존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3개월

2.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중지 6개월

3.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기간 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쇄명령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용중지가 명하여지거나 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대상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기간 동안 제10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814

위반한 행위를 벌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⁴⁾.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전문위원 이 세 진)

4) 다만,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4항은 일반적인 부칙 규정과 달리 환경부장관의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